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0
----------	------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김혜련 의원 대표발의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12월 16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혜련 의원)

1. 제안이유

가. 재개발·재건축지구(서울시 642개소)는 길고양이 및 반려동물의 유기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길고양이 포획의 어려움, 중성화수술 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길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 또한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유기되는 반려견 등은 들개화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지구 내에서 길고양이 및

동물유기 방지대책은 개발의 논리에 밀려 등한시되는 상황임.

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이를 위한 이주매뉴얼 등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사전활동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을 위해 제24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지구(서울시 642개소)에 대하여 길고양이 및 반려동물의 유기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임. 구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발의 배경

-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는 시민의 정책참여와 정책공론화를 위하여 민주주의서울(<https://democracy.seoul.go.kr>)을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12월 19일 시민 신○○ 에 의하여 제안된 내용은 재건축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이 그간 건물잔해 등에 깔려 죽음을 맞게 되는 등 개발논리에 밀린 생명경시풍조를 언급하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5,676건의 시민공감을 얻은 사항임.

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¹⁾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임.
- 또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② (생략) <u><신설></u>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1)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⑤

3 집행부서 의견

-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찬성의 의견임.

도시정비구역은 동물의 보호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예방 활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사업시행자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물보호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구역 사업시행 인가기관인 자치구, 시민 활동가, 동물보호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도 필요함.

4 종합의견

- 시민이 제안한 내용이 조례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제정배경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또한 집행부의 찬성의견과 조례안의 내용이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20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혜련, 이영실, 정진술,
송아량, 송명화, 김태호,
한기영, 임종국, 오한아,
김종무, 김정태, 박순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재개발·재건축지구(서울시 642개소)는 길고양이 및 반려동물의 유기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길고양이 포획의 어려움, 중성화수술 비용의 부담 등을 이유로 길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음. 또한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유기되는 반려견 등은 들개화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지구 내에서 길고양이 및 동물유기 방지대책은 개발의 논리에 밀려 등한시되는 상황임.
- 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예방을 위한 사전활동이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이주매뉴얼 등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사전활동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을 위해 제24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② (생 략) <u><신 설></u>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 물의 구조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에 해당하 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3항을 신설함에 따라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보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60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00,000천원으로 연평균 12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1항, 제2항을 통해서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 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안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3항 신설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비용 발생 가정하여 비용추계

※ 참고)서울시에서는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 기관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2019년 예산 300,000천원), 공공장소에서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및 피학대 동물 구조 보호, 야생화 된 개(들개) 포획·관리하도록 자치구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2019년 예산 872,000천원) 동물구조 지원 및 동물병원 등의 기능이 있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음(2019년 예산 406,560천원)

○ 상세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보호 비용 (조례안 제24조 제3항)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소계(b)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총 비용(b-a)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600,000

○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보호 비용(≒600,000천원)

-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보호 비용

$$= \sum_{i=1}^5 (\text{연간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보호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0년~2024년)

- 연간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 보호 비용

$$= \text{지원단가} \times \text{구조보호 동물 개체수}$$

$$= 200,000\text{원} \times 600\text{마리}$$

$$= 120,000\text{천원}$$

※ 2019년 서울시 예산 편성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 중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 구조(치료) 기관 운영 산출근거(사업설명서 200천원×1500마리) 및 등촌동 재개발지역 이주시 유기동물 구조보호 실적(180마리) 참조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